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 317 호
2011. 3. 28

농촌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 김현진 연구원 · 이현지 연구원(국토연구원)

- 농촌거주 장애인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 수준,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촌거주 장애인의 약 50%가 노인장애인가구이며 독거 노인장애인도 높은 비율

  ➡ **노인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서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 주거대책이 요구됨**

- 농촌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낙후한 노후주택이 많고, 생활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농촌 장애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고 개선비용 부담능력이 낮아서 거주에 매우 불편
  - 주거환경 측면에서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거동이 불편한 농촌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움

-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추진
  -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은 노인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자가 노후주택의 경우 개량자금지원 및 대상자 확대
  -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차가거주 장애인가구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저렴한 주거제공
  -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주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농촌거주 장애인의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까지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1. 농촌 장애인가구의 가구특성

장애인가구 중 약 30%가 농촌에 거주, 특히 노인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음

■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농촌거주 비율이 높고 농촌 장애인가구의 약 50%가 노인장애인가구이며 독거 노인장애인도 9% 상회

• 농촌의 노인비율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여짐

※ 일반가구 중 농촌거주가구비율(19.7%), 장애인가구 중 농촌거주가구 비율(26.6%)

구분	장애인 가구수(천 가구)	비율(%)
전국	2,112.4	100.0
농촌	562.8	26.6
도시	1,549.6	73.4

주: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부),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부)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농촌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생활비 부담 과중

■ 농촌 장애인가구는 장애인가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담이 큰 것(소득 중 생활비 부담비율이 74%)으로 나타남

• 농촌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약 125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소득(239만 원), 도시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155만 원)보다 낮은 수준

[그림 1] 장애인가구 지역별 가계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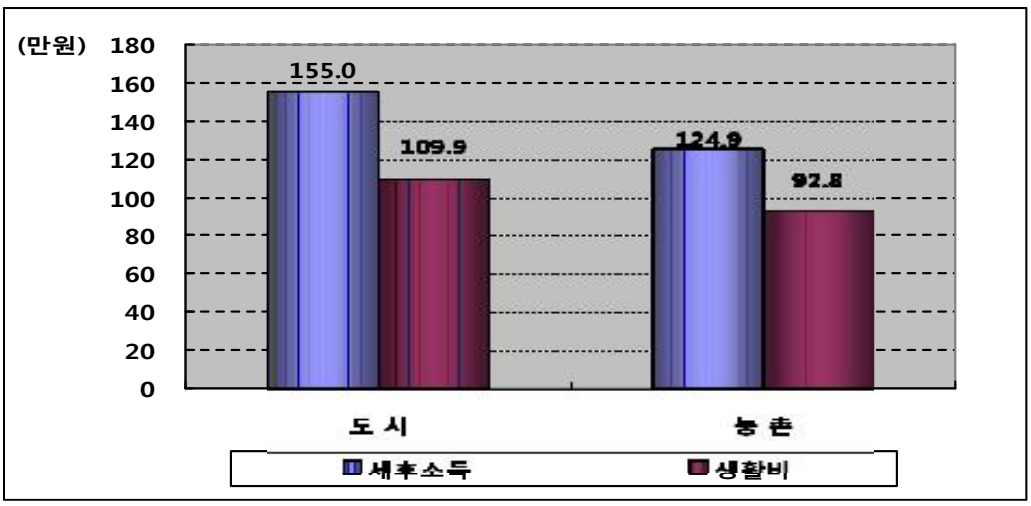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미흡

■ 농촌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주거지원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한 실정

- 농어촌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1]에 한정
- 주로 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380만 원(2010년 기준) 내에서 주택 내의 편의시설(욕실/화장실 안전바 설치, 주방시설 높이 조절, 문턱제거 등) 개조 등에 그침

2. 농촌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

높은 자가 단독거주 비율과 높은 주거비 부담

■ 농촌 장애인가구는 자가비율이 높고 특히 단독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

- 이사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33.6%로 기존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향이 높아서 평균 거주기간이 18.1년(도시 9.3년)에 달함

[표 1]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기타	계
도시	자가	33.3	48.0	12.9	4.6	0.9	0.2	100.0
	차가	39.3	43.1	7.7	5.5	2.5	1.9	100.0
농촌	자가	85.2	9.8	3.3	0.7	0.7	0.4	100.0
	차가	58.0	27.2	6.5	1.4	3.0	5.0	101.0

■ 농촌 장애인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21.1%로 도시 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으나 일반가구(16.0%, '08년)에 비해 높은 수준

1)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실적차이가 크게 발생

［표 2］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농촌	21.1	16.0
도시	30.0	18.7

높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비율과 낮은 개조부담능력

- 농촌 장애인가구 중 자가가구는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며 주택노후도가 심함
  - 198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장애인가구가 37.9%로 나타남
- 농촌거주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은 25.1%로 일반가구는 물론 도시 장애인가구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그림 2］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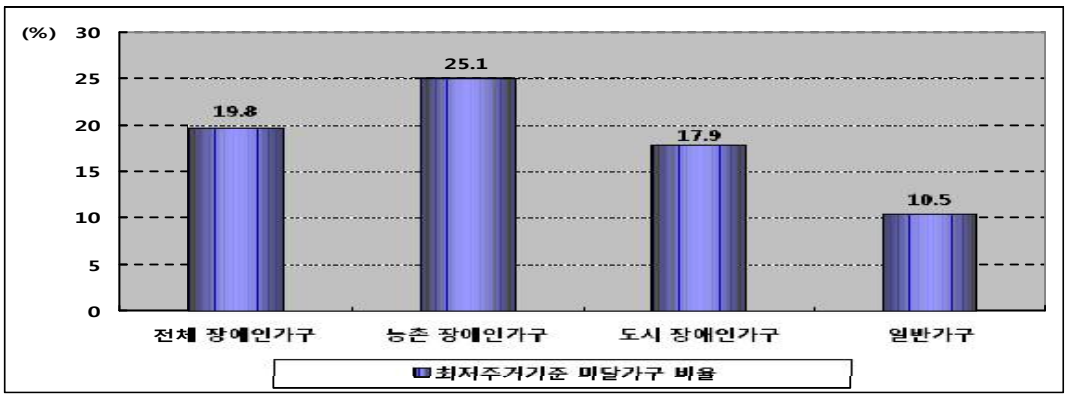

- 장애로 인해 주택내부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농촌 장애인가구는 14.4%에 불과하여 스스로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
  - 특히 농촌의 무주택 장애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고, 주택내부시설 개선비용 부담 가능성이 4.2%에 불과

주택개조 및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긴요

- 농촌 장애인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비 보조(46.0%), 주택개조 비용 보조(15.3%)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농촌 장애인가구의 경우 특히 주택개조 비용 보조와 간단한 집수리에 대한 요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출로 대책마련이 가능
- 주택내부 구조측면에서는 특히 단열, 방수, 주요 구조부, 장애인 생활에 편리한 내부구조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아서 주택내부구조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

[표 3]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계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7.8	17.5	100.0
주거비 보조	46.0	35.8	100.0
주택개조 비용 보조	15.3	5.2	100.0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2.9	6.9	100.0
자립생활을 위한 재가서비스	3.2	4.0	100.0
간단한 집수리	9.0	6.7	100.0
기타	16.0	23.9	100.0

■ 농촌 지역은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을 제외한 생활편의시설까지 이동 시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는 장애인가구에게 더 큰 불편요인
- 주거환경 측면에서 편의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대중교통, 교육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가장 만족도가 떨어짐

3. 정책방안

- **적은 자금 부담으로도 주거상태 개선 가능**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주거생활환경 개선 가능**

● 농촌 자가거주 장애인가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개조, 차가가구는 저렴주택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 농촌 자가 장애인가구는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정보, 정책지원정보, 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 등의 역할 제공, 또한 개조비용 지원
-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 및 상담 제공

-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자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이외에도 대상 확대 추진
  -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주택개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초수급가구 이하의 장애인가구의 경우 정책적 혜택이 전무함
  - 장애인 주거를 제공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가가구 주택의 주택개조를 원활하도록 하고, 전세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대하여 저렴주택 제공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

- 노인장애인가구 및 독거 노인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농촌의 노인 비율이 앞으로도 점차 높아질 전망에 따라 노인 문제와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고려한 주거대책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무 분담을 통해 농촌지역에 적합한 장애인 주거정책 시행
  -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 개량 촉진을 위한 '주택개량기구'를 운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 예산, 인력부족,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주거복지정책 담당부서의 모호성 등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농촌 장애인의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까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 이동서비스제공, 장애인 복지관 활용 등을 통하여 공공업무대행, 은행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강화
- 장애인 주거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정보망을 공유하여 장애인가구의 소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mnkang@krihs.re.kr, 031-380-0349)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김현진 연구원 (hyjkim@krihs.re.kr, 031-380-0232)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이현지 연구원 (hjlee@krihs.re.kr, 031-380-063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홈페이지** www.krihs.re.kr

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KRIHS